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변경 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(역학조사관)채용
시험 시행 변경(자격요건)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
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1. 5. 31.

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: 2명

직무 분야	채용예정 직급	근무기간	채용 인원	담당업무
역학 조사관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다”급	채용일로부터 1년	2명	○ 역학조사 계획 수립, 수행 및 결과 분석 ○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○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○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○ 감염병 심층역학조사 수행

- *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
- *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
- *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

2. 응시자격 기준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가. 공통사항(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(면접시험일 기준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- 거주지 및 성별제한 없음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- 연령제한 : 20세 이상

-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나. 직무분야 자격요건

직무분야	변경 前 자격요건	변경 後 자격요건
역학조사관	①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이면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부분야의 실무경력자 ② 약사,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③ 보건학, 감염병, 역학관련 학사학위이상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부분야의 실무경력자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: 감염병·역학 ※ 해당분야 퇴직기한 : 10년내	①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이면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부분야의 실무경력자 ② 약사,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③ 보건학, 감염병, 역학관련 학사학위이상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부분야의 실무경력자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인정범위 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법인, 기업체, 의료기관 등 에서 보건·의료 경력 ※ 임용 우대 사항 감염병 관리분야 근무 경력자 ※ 해당분야 퇴직기한 : 10년내

- *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(행자부 예규 제38호, 2018. 7. 12)」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⇒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- *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
3. 선발방법(서류전형 → 면접시험)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다.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10일간 재공고함.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
 - *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.
- 동점자 처리
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: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
 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4.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1. 5. 31.(월) ~ 6. 10.(목)	2021. 6. 8.(화) ~ 6. 10.(목)	2021. 6. 18.(금)	2021. 6월 중	2021.6월 중

※ 서류전형 합격자,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구 홈페이지 채용소식란에 게시 예정

※ 위 일정은 접수 인원, 우리 구 사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
변경시에는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

가. 응시원서 접수기간 : 2021. 6. 8.(화) ~ 2021. 6. 10.(목)
(근무시간 내, 12:00 ~ 13:00 제외)

나. 응시원서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
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우편 접수 시

- 주소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
-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-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7,000원 상당) 동봉
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-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(☎032-560-4104)를 통해 접수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

다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1. 6월중

○ 구 홈페이지 채용소식란 게재

라. 면접일정, 최종합격자 발표 : 추후 구 홈페이지 공고

* 위 일정은 접수 인원 및 우리 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5. 보수 및 복무

가. 보수

☐ 채용신분 :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“다” 급 (7급 상당)

☐ 보 수

○ 보수결정의 근거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별표 13, 제35조

○ 연 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임용예정 직급	연봉총액	비 고
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〈7급 상당〉	38,950천 원	7급 연봉 하한액 44,514천원×35/40시간

※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(주35시간)에 비례하여 지급하되, 연봉 외 수당 등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지급함.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복무조건

- 계약기간: 채용일로부터 1년
(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)
- 근무형태: 주35시간 근무
- 근무장소: 보건소 감염병대응과
- 복무기준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하되,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
- 약정해지 : 업무태만 ,근무수행능력부족,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

6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- 응시수수료 : 7,000원
[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)]
- 방문접수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)
- 등기우편 접수: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나. 이력서 1부 <서식2>

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<서식3,서식4>

※ A4용지 각 1~2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<서식5>

마. 경력증명서 1부

- ※ 공고일 기준 **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**
- ※ 발행기관 **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**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- ※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(**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**)
- ※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**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(날인) 받아 제출**
- ※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, **미제출 시 불인정**
- ※ 재직기간, 인사이동사항, 직위·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.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

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

☞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, 2019. 12.26.)

1.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: 3년 인정
2.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3.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(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)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
 -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,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

바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(경력확인용)
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※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‘**보험가입 전체기간**’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- ※ **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**

사.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.

아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.(해당시)

자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차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

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현주소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
카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서식8>

타.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<서식9>

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(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)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-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7. 기타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팀(☎ 032-560-4104)
 - 담당직무 관련 문의 : 감염병대응과 (☎ 032-718-0482~6)